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87,900 00

정리_김하나(한국제품안전협회)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N씨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작료가 있다고 확인하고 돌아간 뒤, 500만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N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불복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불복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행정예의한 권리구제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에 대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 실재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

지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 채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 *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애로·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등
- * 기타 세금관련 애로사항 발생



2.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과생자료의 처리 포함)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다음 납세자가 그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및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것일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심사청구결정절차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줍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이 고지된 후의 권리구제 제도

-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 1단계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감사
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 2단계 :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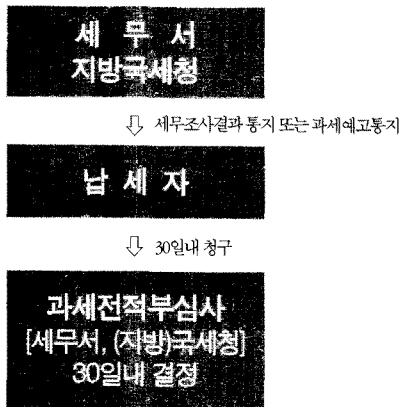
◎ 불복심사시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불복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 ·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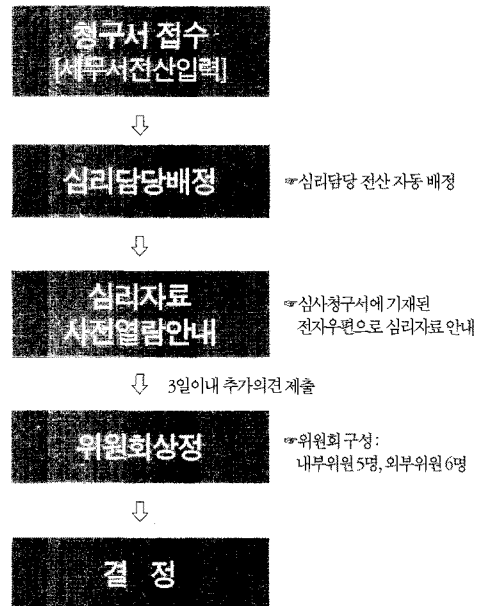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결정 절차〉

심사청구



심사·심판청구 및 소송

